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법 제17조의5제4항에서 규정된 검사·측정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를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에 검사·측정기관의 휴·폐업 절차 규정(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안 제6조2)

○ 수의사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의 장이 휴업 또는 폐업 하고자 할 경우 휴업·폐업 신고서에 ‘검사·측정기관 지정서(원본)’를 첨부하여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12. ~ 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검사·측정의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제19호의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폐업 신고서에는 검사·측정기관 지정서(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검사·측정기관

[] 휴업

[] 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재지		전화번호
휴·폐업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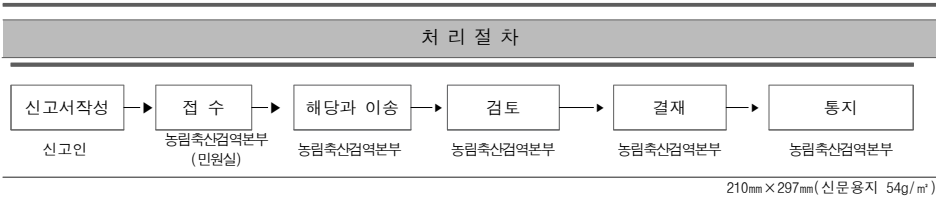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1.검사·측정기관 지정서(원본) 1부	수수료
		없음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6조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법 <u>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검사·측정</u> <u>의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u> <u>는 경우 별지제19호의 휴·폐업 신</u> <u>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폐업 신 <u>고서에는 검사·측정기관 지정서(원</u> <u>본)을 첨부하여야 한다.</u>